

<p>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법 집행국 John Marsh 국장</p> 	<h1>정보공지</h1>	
<p>제목: 시위, 데모 및 집회 중 대중의 법적 권리</p>	<p>번호 2023-DLE-09</p>	<p>정보 문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dojcsp@doj.ca.gov</p>
	<p>날짜: 10/20/2023</p>	

대상: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의 모든 경찰국장, 보안관, 책임자

본 공지는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과 주 및 연방 성문법에 따라 시위, 행진, 데모, 집회 및 이와 유사한 모임 관련 대중의 법적 권리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모든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과 관행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교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I.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보호 사항

A. 일반 보호 사항

1. 집회를 열 권리

개인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데모,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¹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국민은 역사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대중의 접근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폐쇄가 최우선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가 해당 이익을 위해 엄밀하게 조정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 장소의 일반적인 예로는 공공 거리, 공원, 보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²

“도로와 보도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교통, 안전 및 경쟁적 사용 우려를 현실적으로 야기하는” 행진 및 데모에 대해서만 허가 요청이 필요합니다.³ 허가 승인 절차는 기타 시간, 장소, 방식 제한과 마찬가지로 내용과 관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법 집행을 포함하여 정부 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해서는 안 되고, 범위를 엄밀하게 설정해야 하며, 발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1. *콜린스 대 조단* (9th Cir. 1996) 110 F.3d 1363, 1371 (“데모, 시위 행진, 피켓팅과 같은 활동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명백히 보호된다.”).

2. *인덱스 뉴스페이퍼 LLC 대 미국 연방보안관 서비스*, *supra*, 977 F.3d, pp. 829-831(인용 *프레스 엔터프라이즈 회사 대 캘리포니아 고등 법원* (1986) 478 U.S. 1).

3. *산타모니카 푸드나잇 대 산타모니카 시* (9th Cir. 2006) 450 F.3d 1022, 1039 (강조 추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⁴ 일반적으로 짧은 사전 통지가 필요할 수 있지만, 허가 절차에서는 속보에 상응하는 발언을 허용해야 합니다.⁵

또한, 시위와 집회는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⁶ 가능하면 법 집행 기관은 주최 측과 협력하여 교통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기록할 권리: 모든 대중은 일반적으로 시위와 공공 법 집행 활동을 포함하여 공공의 관심사를 기록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⁷ 공공 장소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있을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법 집행 기관의 사진을 찍거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를 촬영한 사실 자체만으로 형법 제 148 항 (a)호(체포 저항)를 위반했다거나 경찰관의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자를 구금할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나 또는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⁸

3. 비판할 권리: 수정헌법 제 1 조는 엄밀하게 정의된 몇 가지 범주의 발언을 제외한 모든 발언을 보호합니다.⁹ 모든 대중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의 조치를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¹⁰ 보호되는 발언에는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¹¹

B. 관점 및 콘텐츠 차별 금지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는 콘텐츠와 관점에 근거하여 어떤 발언자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의 실질적 내용이나 전달 메시지에 근거하여 언론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공리입니다... 사적인 발언이나 표현의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는 특정 발언자를 다른 발언자에 대해 선호하지 않습니다.

4. *Id.* p. 1037; *셔틀워스 대 버밍햄 시, Ala.* (1969) 394 U.S. 147, 151(허가 체계에는 “엄밀하고 객관적이며 명확한 기준...” 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적시성이 중요한 ‘정치적’ 연설에 적용한다면 ‘하루나 이틀’의 지연도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 *N.A.A.C.P., 서부 지역 대 리치몬드 시* (9th Cir. 1984) 743 F.2d 1346, 1356(*캐롤 대 프린세스 앤 위원* (1968) 393 U.S. 175, 182 인용).

6. *베이 지역 평화 네이비 대 미국* (9th Cir. 1990) 914 F.2d 1224, 1229 (“연설자가 ‘의도하는 청중’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은 충분하지 않다.”).

7. *포다이스 대 시애틀 시* (9th Cir. 1995) 55 F.3d 436, 442.

8. Pen. Code, § 148, subd. (g).

9. 예를 들어, 실제적 위협, 음란물, 임박한 불법 행위에 대한 선동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 *답변 George T.* (2004) 33 Cal.4th 620, 634. 그러나 폭력, 법 위반 또는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발언도 “그러한 옹호가 임박한 불법 행동을 선동하고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브란덴부르크 대 오하이오* (1969) 395 U.S. 444, 447(강조 추가).

10. *휴스턴 대 힐* (1987) 482 US 451, 461.

11.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1964) 376 U.S. 254, 270.

메시지로 인한 표현에 대한 차별은 위헌으로 추정됩니다.”¹² “[무엇보다도] 수정헌법 제 1 조는 정부가 메시지, 아이디어, 주제 또는 내용을 이유로 표현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¹³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확장됩니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상징적 발언(정치적 상징물 표현)이나 표현적 행위(국기를 흔들거나 불태우는 것)를 보호합니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를 통한 시위 참여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보호합니다.

C. 보복 행위 금지

수정헌법 제 1 조는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일반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¹⁴ 금지되는 보복 행위에는 무력 사용, 불법적인 수색 및 진압, 정당한 이유 없는 체포가 포함됩니다.¹⁵

상대방의 발언이 보복 행위의 유일한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보복 행위의 “실질적 또는 동기 부여적 요인”이 상대방의 발언인 경우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¹⁶

D. 폭력에 대한 대응

수정헌법 제 1 조의 활동을 관련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나 명백하고 실제적인 폭력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명백하고 실제적인 폭력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법 집행 기관이 발언 활동을 중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 1 조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¹⁷ 즉, “정부는 (1) '임박한 불법적 행동을 선동하거나 발생시키려는 것' *이거나* (2) '그러한 행동을 선동하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공공 토론장에서의 분노 또는 선동적 발언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¹⁸

12. *로젠버거 대 버지니아 대학교 총장 및 방문자* (1995) 515 U.S. 819, 828.

13. *시카고시 경찰국 대 모슬리* (1972) 408 U.S. 92, 95. 청취자의 반응을 근거로 치안 활동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청취자의 반응을 이유로 발언을 제한하는 행위는 콘텐츠에 기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포사이드 카운티, Ga 대 민족주의 운동* (1992) 505 U.S. 123, 134-135 (“단순히 적대적인 균종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발언에 대해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없다.”).

14. *인덱스 뉴스페이퍼 LLC 대 미국 연방보안관 서비스*, *supra*, 977 F.3d, pp. 827.

15. *Id.* p. 827, n. 4.

16. *Id.* p. 827.

17. *콜린스 대 조던*, *supra*, 110 F.3d, pp. 1371-1372 (“수정헌법 제 1 조의 활동과 얽혀있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수정헌법 제 1 조 활동의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발생한 후에 처벌하는 것이다.”).

18. *Id.* p. 1371 (*브란덴부르크 대 오하이오 인용*, *supra*, 395 U.S. p. 447) (원문에서 강조).

불법 집회로 선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는 활동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시위 진압 및 무질서 책임자 체포 등 다른 대안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군중을 해산하기 전에 불법 집회로 선포되었음을 명확하고 잘 들리는 음성으로 알리는 등 충분한 통지를 하고, 모인 사람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¹⁹

II. 수색 및 진압

미국 수정헌법 제 4 조. 부당한 수색 및 진압(체포 포함),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시위 또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A. 진압

다른 모든 진압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시위, 데모, 공공 집회에도 적용됩니다. 체포는 반드시 법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란 체포 경찰관에게 알려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또는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사람이라면 해당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²⁰ 경찰관이 “무장을 했으며 위험하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²¹

법 집행 기관은 범죄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합리적이고 명백한 의심이 있을 때 잠시 “조사를 위한 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²² 합리적 의심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도출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해야 합니다.²³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의심이나 ‘직감...’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²⁴

“[수사상의] 구금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정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조사 방법은 단기간에 경찰관의 의심을 확인하거나 불식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침해를 끼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²⁵

법 집행 기관은 개인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구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인은 실제로 법 집행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경찰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²⁶

19. *벨슨 대 데이비스 시* (9th Cir. 2012) 685 F.3d 867, 882-883.

20. *더브너 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9th Cir. 2001) 266 F.3d 959, 966.

21. *테리 대 오하이오* (1968) 392 U.S. 1, 27.

22. *일리노이 주 대 워드로우* (2000) 528 US 119, 123.

23. *테리 대 오하이오*, *supra*, 392 U.S., p. 21.

24. *Ibid.*

25. *플로리다 대 로이어* (1983) 460 U.S. 491, 500.

26. *크라고 대 레오나르드*, K No. 0877 (E.D.) 참조. Cal., Aug. 5, 2014) 2014 WL 3849954, *5 (인용: *클리크 v. 커니프* (1st Cir. 2011) 655 F.3d 78, 84)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공공 장소에서의 평화로운 체포 장면 촬영은 합리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 수색

다른 모든 수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시위, 데모, 공공 집회에도 적용됩니다. 수정헌법 제 4 조에 따라 수색은 적법한 체포에 따른 수색,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수색, 몸수색 등 영장 요건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유효한 영장(합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²⁷ 휴대폰 및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색은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체포에 부수하여 수행될 수 없으며 영장이 필요합니다.²⁸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전자 통신 개인정보 보호법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과 관련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전자 기기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집행 기관이 영장, 감청 명령 또는 동의 없이 전자 기기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²⁹ 법 집행 기관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근거하여 기기를 수색하는 경우, 수색 후 3 일 이내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³⁰

C. 치명적이지 않은 무력 사용

다른 모든 상황에서 무력 사용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시위, 데모, 공공 집회에도 적용됩니다. “체포 대상자가 공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찰관은 효과적인 체포, 도주 방지 또는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³¹ “[경찰관은] 의심되는 범죄의 심각성 또는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실제 또는 위협적인 저항 수준에 비례한다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의 무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³² 경찰관은 적절한 무력 사용을 결정할 때 체포 대상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³³ 또한, 경찰관은 “가능한 경우 무력 행사 대신 단계적 축소 기법, 위기 개입 전술 및 기타 대안을 활용”해야 합니다.³⁴

법 집행기관이 시위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든 폭동으로 간주하든 분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개인에 대한 폭동 상황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³⁵

27. *라일리 대 캘리포니아* (2014) 573 US 373, 384-385; *켄터키 대 킹* (2011) 563 US 452, 460.

28. *라일리 대 캘리포니아*, *supra*, 573 U.S., pp. 401-402. 휴대폰 위치 정보도 이와 유사한 보호를 받는다. (*카펜터 대 미국*, (2018) 138 S.Ct. 2206, 2221.)

29. Pen. Code, § 1546.1, subd. (a).

30. Pen. Code, § 1546.1, subd. (h).

31. Pen. Code, § 835a, subd. (b).

32. Gov. Code, § 7286, subd. (b)(2).

33. *Vos 대 뉴포트비치 시* (9th Cir. 2018) 892 F.3d 1024, 1033-1034, cert. 부제 거부. *뉴포트비치 시, Ca 대 보스* (2019) 139 S. Ct. 2613.

34. Gov. Code, § 7286, subd. (b)(1).

35. *시미날로 대 스트레이처* (6th Cir. 2006) 434 F.3d 461, 468.

'일반적인 무질서' 또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폭력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저항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³⁶ 이는 주변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을 신속하게 해산시키려는] 욕구는 실제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³⁷

D. 치명적인 무력 사용

경찰관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또는 “즉시 체포하지 않는 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도주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³⁸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경찰관이 해당 인물이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은 해당 인물이 자신에게 가하는 위협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³⁹ 경찰관은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행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고려해야 합니다.”⁴⁰ 경찰관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자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하기 전에 가능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인물이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⁴¹

이 정보 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dojcsp@doj.ca.gov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 *Id.* p. 881.

37. *Id.* p. 880.

38. Pen. Code, § 835a, subd. (c)(1).

39. Pen. Code, § 835a, subd. (c)(2).

40. Gov. Code, § 7286, subd. (b)(6).

41. Pen. Code, § 835a, subd. (c)(1)(B).